###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43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조경태·강선영·김용태

이헌승 · 서천호 · 곽규택

김대식 · 서명옥 · 김선교

박덕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산불 예방, 특히 고의적 방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상 산불 방 화범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5년에서 최대 15년이며, 이마저도 초범이거 나 우발적으로 일으킨 방화일 경우 감형을 받는 사례가 허다함. 이에 고의적 방화일 경우 형량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산불 방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임.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연발화보다는 실수에 의하거나 고의적인 발화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30만원~100만원 선으로 매우낮은 수준임.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해 의식적으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조항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해 항시 산불 예방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함(안 제53조 및 제57조).

법률 제 호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2.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제57조제2항 중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자
- 3.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	제53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u>
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u>&lt;신 설&gt;</u>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u>불을 지른 자</u>
<u> &lt;신 설&gt;</u>	2.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
	<u>른 자</u>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u>&lt;삭 제&gt;</u>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과태료) ① (생 략)	제5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	<u>해당하는</u>
<u>손한</u>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u>.</u>
과태료를 부과한다.	
<u>&lt;신 설&gt;</u>	1.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
	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
	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
	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신 설>	2.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5. (생략)
-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3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 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 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 기구를 날린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3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3. (생 략)

여	ᄾ	구립	[0]	나	산	림	인접	설지	역	에
서	支	5림	]축	산 :	식품	부	령,	으로	· -	정
하님	늗	7]	간여	케	풍.	등	등	소	형	열
	구 :	릴	날	긘	 자					

3. 제45조의8제10항을 위반하여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3	 	 	 	 

1. ~ 1의5. (현행과 같음) <<u>삭 제></u>

<삭 제>

4		-
	<u>70만원</u>	-
	,	
1.	~ 3. (현행과 같음)	